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8. 11. 19(월) 총 1매(본문 1매)	
담당 부서	공공주택총괄과	담당자	· 과장 이병훈, 사무관 이민규 · ☎ (044)201-4580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행복주택 경쟁률 '34대1' 육박했는데...빈집 된 이유

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한 행복주택이 미임대 된 경우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*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(10.5~11.14) 후 법제처 심사 진행 중

<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제23조제3항) >

- (현행) 국민·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약자용으로 공급한 이후 미임대된 주택은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 가능
- (개정안) 행복주택도 미임대 주거약자용주택은 청년·신혼부부 등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< 관련 보도내용 (SBS 뉴스, 11.18) >

- 신혼부부와 대학생,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만든 행복주택이 신청받을 때 높은 경쟁률과 달리 공실인 경우가 많음
 - 수도권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전체의 8%를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, 이들이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을 외면
-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 사무관(☎ 044-201-458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